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6.20.(목)]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detre-gc.co.kr>)에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과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6.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3.12.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5년	적용	공공택지(공공주택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4.07.01.(월)	24.07.02.(화)	24.07.03.(수)	24.07.10.(수)	24.07.22.(월) ~ 24.07.24.(수)
방법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개별조회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진행
시간	(09:00 ~ 17:30)	(09:00 ~ 17:30)	(09:00 ~ 17:30)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견본주택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대방건설 주식회사	대방건설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법인등록번호	110111-0757158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대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주)나로이엔씨	(주)이인	(주)신화에프이씨
감리금액	2,729,382,150	683,319,869	872,698,180	128,7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내용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과천시 도시정비과 - 16799호(2024.06.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28층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총 740세대 중 일반공급 453세대, 특별공급 287세대 [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7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7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2세대, 생애최초 6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m ²)	세대별대지비율(%)	총공급세대수	주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4000249	01	059,9955	59	59,9955	23,9715	83,9670	95,5250	179,4920	44,3448	740	51	74	74	22	66	287	453	24
합계											740	51	74	74	22	66	287	453	24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는 일반공급세대수에 포함되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59,9955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주택형	동호라인별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10%)	1개월 이내(10%)	중도금				잔금				
									1회(15%)	2회(15%)	3회(15%)	4회(15%)		20%			
203동 1,2호 206동 1,2호	1층	4	510,417,856	257,932,144	768,350,000	76,835,000	76,835,000	115,252,500	115,252,500	115,252,500	115,252,500	153,670,000					
		4	510,417,856	257,932,144	768,350,000	76,835,000	76,835,000	115,252,500	115,252,500	115,252,500	115,252,500	153,670,000					
	3층~4층	8	510,417,856	274,832,144	785,250,000	78,525,000	78,525,000	117,787,500	117,787,500	117,787,500	117,787,500	157,050,000					
		4	510,417,856	291,732,144	80,215,000	80,215,000	120,322,500	120,322,500	120,322,500	120,322,500	120,322,500	160,430,000					
	5층	4	510,417,856	300,232,144	810,650,000	81,065,000	81,065,000	121,597,500	121,597,500	121,597,500	121,597,500	162,130,000					
		4	510,417,856	300,232,144	810,650,000	81,065,000	81,065,000	121,597,500	121,597,500	121,597,500	121,597,500	162,130,000					
	8층~10층	12	510,417,856	308,732,144	819,150,000	81,915,000	81,915,000	122,872,500	122,872,500	122,872,500	122,872,500	163,800,000					
		20	510,417,856	317,132,144	827,550,000	82,755,000	82,755,000	124,132,500	124,132,500	124,132,500	124,132,500	165,510,000					
	16층~20층	20	510,417,856	325,632,144	836,050,000	83,605,000	83,605,000	125,407,500	125,407,500	125,407,500	125,407,500	167,210,000					
		32	510,417,856	329,932,144	840,350,000	84,035,000	84,035,000	126,052,500	126,052,500	126,052,500	126,052,500	168,070,000					
	059,9955	1층	20	510,417,856	285,332,144	795,750,000	79,575,000	79,575,000	119,362,500	119,362,500	119,362,500	159,150,000					
20			510,417,856	285,332,144	795,750,000	79,575,000	79,575,000	119,362,500	119,362,500	119,362,500	159,150,000						
필로티 3층(204동1호, 205동4호, 207동1호, 208동4호)		4	510,417,856	320,432,144	830,850,000	83,085,000	83,085,000	124,627,500	124,627,500	124,627,500	124,627,500	166,170,000					
		44	510,417,856	303,232,144	813,650,000	81,365,000	81,365,000	122,047,500	122,047,500	122,047,500	122,047,500	162,730,000					
5층		24	510,417,856	320,432,144	830,850,000	83,085,000	83,085,000	124,627,500	124,627,500	124,627,500	124,627,500	166,170,000					
		24	510,417,856	329,232,144	839,650,000	83,965,000	83,965,000	125,947,500	125,947,500	125,947,500	125,947,500	167,930,000					
7층		24	510,417,856	329,232,144	839,650,000	83,965,000	83,965,000	125,947,500	125,947,500	125,947,500	125,947,500	167,930,000					
		24	510,417,856	329,232,144	839,650,000	83,965,000	83,965,000	125,947,500	125,947,500	125,947,500	125,947,500	167,930,000					
8층~10층		72	510,417,856	337,932,144	848,350,000	84,835,000	84,835,000	127,252,500	127,252,500	127,252,500	127,252,500	169,670,000					
		120	510,417,856	346,732,144	857,150,000	85,715,000	85,715,000	128,572,500	128,572,500	128,572,500	128,572,500	171,430,000					
16층~20층		120	510,417,856	355,532,144	865,950,000	86,595,000	86,595,000	129,892,500	129,892,500	129,892,500	129,892,500	173,190,000					
	156	510,417,856	359,932,144	870,350,000	87,035,000	87,035,000	130,552,500	130,552,500	130,552,500	130,552,500	174,070,000						

* 상기 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방식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15535	코리아인텍(주)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금
주택형(㎡)		계약시	입주자정일
59	6,350,000	1,000,000	5,350,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15557	코리아인텍(주)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취소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신고일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일자가 빠른 당첨은 유효하며, 접수일자가 늦은 당첨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이 특별공급 건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잔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잔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잔액이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 : 51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 : 74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대,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퍼센트 범위) : 74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3퍼센트 범위) : 22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퍼센트 범위) : 66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하려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정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가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예치금액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주택소유권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일반공급 입주자자격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